

海洋汚染防止法

〔1977年12月31日〕
法律 法3079號

改正 1981. 12. 31 法3531號 1986. 12. 31 法3905號

第1章 總 則

第1條 [目的] 이 법은 船舶 및 海洋施設 등에서 海洋에 排出하는 기름 또는 廢棄物을 規制하고 海洋의 汚染物質을 除去하여 海洋環境을 保全함으로써 國民의 健康과 財産을 보호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이 법에서 사용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86. 12. 31>

1. “기름”이라 함은 石油事業法에서 정하는 原油 및 石油製品(石油가스를 제외한다)과 이들을 함유하는 油性混合物(이하 “油性混合物”이라 한다)을 말한다.
2. “廢棄物”이라 함은 사람이 필요로 하지 아니하게 된 物質 등으로서 圓滑한 海洋利用을 阻害하는 物質(기름을 제외한다)로서 保健社會部 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排出”이라 함은 기름·廢棄物 또는 鑛滓 등을 海洋에 漏出·流出 또는 投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汚染의 輕減 또는 統制에 대한 適法한 科學的 調査·研究을 目的으로 하는 기름·廢棄物 또는 鑛滓 등의 流出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4. “瞬間排出率”이라 함은 어느 時點에 있어서 時間當 리터에 의한 기름의 排出速度를 그 時點에 있어서의 노트에 의한 船舶의 速度로 나누는 것을 말한다.
5. “船舶”이라 함은 海洋에서 航行의 用途에 사용되는 船舟類를 말한다.

6. “油槽船”이라 함은 그 貨物艙의 大部分이 散積하는 기름의 輸送을 위한 構造를 가지고 있는 船舶을 말한다.
7. “海洋施設”이라 함은 海域 또는 海域과 陸地를 連結하여 設置되는 構造物로서 保健社會部 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船底廢水”라 함은 船舶의 밑바다에 된 油性混合物을 말한다.
9. “廢油”라 함은 船舶 내에서 생긴 기름으로서 그 狀態로는 쓸 수 없게 된 것을 말한다.
10. “廢油處理施設”이라 함은 廢油의 處理를 目的으로 設置된 施設을 말한다. 다만, 船舶 내에서 생기는 廢油를 自體處理하는 施設을 제외한다.
11. “廢油處理事業”이라 함은 廢油處理施設에 의하여 廢油處理를 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第3條 [適用범위] 이 법의 規定은 다음 各號의 경우에 適用한다.

1. 大韓民國領土에 接續되는 海域 및 기타 海域으로서 大統令으로 정하는 海域 이내에서 모든 船舶 또는 海洋施設 등으로부터의 海洋汚染
2. 第1號에서 정한 海域 밖에서 海底鑛物資源開發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한 海底鑛區의 開發과 關連하여 發生하는 海洋汚染
3. 第1號에서 정한 海域 밖에서 船舶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大韓民國船舶이 행한 海洋汚染
4. 沿岸汚染特別管理海域내에서의 海

洋汚染<新設 81. 12. 31>

第4條 [適用排除] ①이 법의 規定은 放射性物質에 의한 海洋汚染 및 그 防止에 관하여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②이 법의 規定은 軍艦과 非商業用政府 船舶에 관하여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다만, 海洋을 汚染시키지 아니하도록 適切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第2章 船舶으로부터의 기름 또는 廢棄物의 排出規制

第5條 [船舶으로부터의 기름의 排出 금지] ①누구든지 海洋에서 船舶으로부터 기름을 排出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改正 86. 12. 31>

1. 船舶의 安全을 확보하거나 人命을 救助하기 위한 기름의 排出
2. 船舶의 損傷 기타 부득이한 原因에 의하여 기름이 排出된 경우에 계속 排出되는 것을 防止하기 위하여 可能한 모든 措置를 取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기는 기름의 排出

②第1項 本文의 規定은 船舶에 있어서 排出되는 기름 중의 油分이 100萬分の 15 미만이거나 다음 各號의 모든 條件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다만, 油槽船에 있어서는 船底廢水에 限한다.<改正 86. 12. 31>

1. 船舶이 航行 중일 것
2. 油分의 瞬間排出率이 1海里當 60 리터 이하일 것
3. 排出되는 기름 중의 油分이 100萬分の 100未滿일 것
4. 기름의 排出은 陸地 또는 島嶼로부터 12海里 이상 떨어진 곳에서 행하여질 것<新設 86. 12. 31>
5. 기름의 排出 중에는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海洋汚染防止裝置 중 農水産部長官과 交通部長官의 共

同部令(이하 “共同部令”이라 한다)이 정하는 裝置를 作動시킬 것<新設 86. 12. 31>

③第1項 本文의 規定은 油槽船에 있어서 다음 各號의 모든 條件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改正 86. 12. 31>

1. 油槽船이 航行 중일 것
2. 油分의 瞬間排出率이 1海里當 60 리터 이하일 것
3. 1회의 航行 중(물밸러스트의 積載를 始作할 때부터 그 물밸러스트의 排出을 完了할 때까지를 말한다)에 排出되는 油分이 貨物積載容積의 30,000分の 1 이하일 것. 다만, 共同部令으로 정하는 油槽船에 대하여는 15,000分の 1이하로 한다.
4. 排出은 모든 國家의 領海의 基線으로부터 50海里 이상 떨어진 곳에서 행하여질 것
5. 기름의 排出 중에는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海洋汚染防止裝置 중 共同部令이 정하는 裝置를 作動시킬 것<新設 86. 12. 31>

④第1項 本文의 規定은 洗淨된 油槽船의 貨物艙에서 排出하는 물밸러스트가 共同部令으로 정하는 洗淨度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6條 [海洋汚染防止裝置의 設置 등]

①船舶所有者(船舶이 賃貸되어 있을 때에는 船舶賃借人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共同部令이 정하는 基準에 의하여 船舶에 기름의 排出을 방지하기 위한 船底廢水排出防止裝置·물밸러스트 排出防止裝置·分離물밸러스트탱크·貨物艙 原油洗淨設備 등(이하 “海洋汚染防止裝置”라 한다)을 設置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海洋汚染防止裝置는 共同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海運港灣廳長으로부터 型式承認 및 檢定 또는 인정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海洋汚染防止裝置는 共同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하고 作動하여야 한다.

〈全改 86. 12. 31〉

第6條의2 【물밸러스트 또는 기름의 積載制限】 ①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分離밸러스트탱크를 設置한 油槽船의 貨物艙과 共同部令이 定하는 船舶의 燃料油탱크에는 物밸러스트를 積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船舶의 安全을 확보하기 위하여 共同部令으로 定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共同部令이 定하는 船舶의 船首탱크와 衝突隔壁보다 앞쪽에 있는 탱크에는 기름을 積載하여서는 아니된다.

〈本條新設 86. 12. 31〉

第6條의3 【船舶내 汚染物質의 處理】 船舶내에서 발생하는 슬러지·슬룸·船底廢水·물밸러스트·油性混合物 기타 汚染物質은 共同部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船舶내에 貯藏하거나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廢油處理施設,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自家廢油處理施設 또는 第25條의 2의 規定에 의한 貯藏施設에서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86. 12. 31〉

第7條 【汚染防止 管理人】 ①船舶所有者는 船舶마다 船船舶의 乘務員 中에서 船長을 補佐하여 船舶으로부터 기름 및 廢棄物의 排出防止에 관한 業務를 管理하기 위하여 汚染防止管理人을 任命하여야 한다.〈改正 86. 12. 31〉

②船舶所有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汚染防止管理人을 任命한 證憑書類를 船舶내에 비치하여야 한다.〈新設 86. 12. 31〉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汚染防止管理人의 資格·業務內容·遵守事項 기타 필요한 사항은 共同部令으로 定한다.〈改正 86. 12. 31〉

第8條 【기름記錄簿】 ①船長은 기름記錄簿를 船舶내에 비치하고 記錄·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被曳引船의 경우에는 船舶所有者의 事務室에 비치하여야 한다.〈改正 86. 12. 31〉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름記錄簿의

記載事項·保存方法 기타 필요한 事項을 共同部令으로 定한다.〈改正 86. 12. 31〉

第9條 【適用 제외】 ①第6條·第7條 및 第8條의 規定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船舶에 관하여는 適用하지 아니한다.〈改正 86. 12. 31〉

②第7條의 規定은 船舶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大韓民國船舶 이외의 船舶에 關하여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10條 【船舶으로부터의 廢棄物의 排出 금지】 ①누구든지 海洋에서 船舶으로부터 廢棄物을 排出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86. 12. 31〉

1. 船舶의 安全을 확보하거나 人命을 救助하기 위한 廢棄物의 排出
2. 船舶의 損傷 기타 부득이한 原因에 依하여 廢棄物이 排出된 경우에 계속 排出되는 것을 防止하기 위하여 可能한 모든 措置를 取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생기는 廢棄物의 排出

②第1項 本文의 規定은 船舶내에 있는 船員과 乘客 등의 日常生活에서 생기는 糞尿 등 廢棄物을 保健社會部令으로 定하는 處理方法 및 指定海域에 排出하는 경우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改正 86. 12. 31〉

③第1項 本文의 規定은 公有水面埋立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免許를 받아 埋立하는 廢棄物을 保健社會部令으로 定하는 處理方法에 따라 排出하는 때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改正 86. 12. 31〉

④第1項 本文의 規定은 産業廢棄物 등으로서 陸地에서 處理가 곤란한 廢棄物을 保健社會部令으로 定하는 處理方法 및 指定海域에 排出하는 경우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改正 86. 12. 31〉

第11條 【廢棄物運搬船의 登錄】 ①船舶을 廢棄物의 運搬에 常用하고자 하는 船舶所有者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環境廳長에게 登錄을 하여야 한다.〈改正 86. 12. 31〉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하는 船舶의 設備·構造 및 廢棄物의 運搬方法 기타 필요한 事項은 保健社會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86. 12. 31>

第12條 【變更申告 등】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한 船舶所有者는 登錄事項이 變更되거나 船舶이 廢棄物의 運搬에 常用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의하여 遲滯없이 그 事項을 環境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86. 12. 31>

第13條 【登錄의 取消】 環境廳長은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廢棄物運搬船의 登錄을 한 者가 第1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健社會部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登錄을 取消할 수 있다. <改正 86. 12. 31>

第14條 【廢棄物의 處理記錄簿】 ①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한 船舶의 船長은 廢棄物處理記錄簿를 船舶내에 備置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處理記錄의 記載事項·保存方法 기타 필요한 事項은 保健社會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86. 12. 31>

第2章의 2 海洋汚染防止裝置의 檢査 등

<本章新設 86. 12. 31>

第14條의2 【檢査】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海洋汚染防止裝置를 設置하여야 할 船舶(이하 “檢査對象船舶” 이라 한다) 所有者는 당해 船舶에 設置된 海洋汚染防止裝置에 대하여 共同部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水産廳長 또는 海運港灣廳長이 행하는 다음의 部分에 의한 檢査를 받아야 한다.

1. 定期檢査：海洋汚染防止裝置를 船舶에 최초로 設置하여 航行에 사용하고자 할 때 및 第14條의 9의 規定에 의한 有效期間이 만료할 때

행하는 精密한 檢査

2. 中間檢査：定期檢査와 定期檢査와 的 中間에 共同部令이 定하는 時期에 行하는 簡易한 檢査

3. 臨時檢査：第6條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設置한 海洋汚染防止裝置를 交替·改造 또는 修理를 할 때 行하는 檢査

4. 臨時航行檢査：第14條의3第1項의 規定에 依한 海洋汚染防止證書를 교부받기 전에 船舶을 臨時로 航行에 사용하고자 할 때 行하는 檢査

第14條의3 【海洋汚染防止證書 등의 교부】 ①水産廳長 또는 海運港灣廳長은 第14條의 2의 規定에 依한 定期檢査 또는 臨時航行檢査에 合格한 船舶所有者에 대하여 海洋汚染防止證書 또는 臨時海洋汚染防止證書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依한 海洋汚染防止證書 또는 臨時海洋汚染防止證書의 교부 기타 필요한 사항은 共同部令으로 定한다.

第14條의4 【國際海洋汚染防止證書의 교부】 ①水産廳長 또는 海運港灣廳長은 第14條의 2의 規定에 依한 檢査에 合格한 船舶所有者로부터 당해 船舶을 國際航行에 사용하기 위하여 國際海洋汚染防止證書의 交付申請이 있는 때에는 共同部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교부받은 國際海洋汚染防止證書는 第14條의3第1項의 規定에 依한 海洋汚染防止證書로 본다.

第14條의5 【檢査對象船舶의 航行 등】 ①船舶所有者는 海洋汚染防止證書 또는 臨時海洋汚染防止證書를 교부받지 아니한 檢査對象船舶을 航行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船舶所有者는 國際海洋汚染防止證書를 교부받지 아니한 檢査對象船舶을 國際航行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船舶所有者는 海洋汚染防止證書, 臨時海洋汚染防止證書 또는 國際海洋汚染

防止證書(이하 “海洋汚染防止證書등”이라 한다)에 기재된 조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당해 船舶을 航行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은 第14條의 2의 規定에 의한 海洋汚染防止裝置에 대한 檢査 또는 船舶安全法 第5條第1項(漁船인 경우에는 漁船法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船舶檢査를 받기 위하여 航行하는 경우에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⑤海洋汚染防止證書 등을 교부받은 船舶所有者는 당해 船舶내에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第14條의6 [檢査의 代行] ①水産廳長 또는 海運港灣廳長은 第14條의 2의 規定에 의한 海洋汚染防止裝置에 대한 檢査를 檢査能力이 있는 者를 지정하여 代行하게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代行者의 지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共同部令으로 정한다.

第14條의7 [不適船舶에 대한 措置] ①水産廳長 또는 海運港灣廳長은 海洋汚染防止裝置가 第6條의 規定에 의한 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船舶所有者에 대하여 당해 海洋汚染防止裝置의 交替·改造 또는 修理 기타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②水産廳長 또는 海運港灣廳長은 船舶所有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을 正當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고 당해 船舶을 航行에 사용한 때에는 당해 船舶에 대하여 航行停止 處分을 할 수 있다.

第14條의8 [協約當事國의 船舶에 대한 協約證書의 교부 등] ①檢査對象船舶의 大韓民國船舶所有者 또는 船長은 1973年 船舶으로부터의 汚染防止를 위한 國際協約 및 1973年 船舶으로부터의 汚染防止를 위한 國際協約에 관한 1978年 議定書(이하 “國際協約”이라 한다)의 當事國인 外國(이하 “協約當事國”이라 한다)의 政府로부터 國際海洋汚染防止證

書에 상당하는 證書(이하 “協約證書”라 한다)를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當該國 駐在大韓民國의 領事를 통하여 申請하여야 한다.

②水産廳長 또는 海運港灣廳長은 協約當事國의 政府로부터 當該國의 船舶에 대하여 協約證書의 交付申請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船舶에 대하여 第14條의 2의 規定에 의한 定期檢査에 상당하는 檢査를 행하고 당해 船舶所有者 또는 船長에게 協約證書를 교부할 수 있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교부받은 協約證書는 第14條의4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교부받은 國際海洋汚染防止證書로 본다.

第14條의9 [海洋汚染防止證書 등의 有效期間] ①海洋汚染防止證書 등의 有效期間은 4年으로 한다.

② 水産廳長 또는 海運港灣廳長은 共同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海洋汚染防止證書 등의 有效期間 만료후 5月の 범위안에서 그 效力을 연장할 수 있다.

③海洋汚染防止證書 등은 中間檢査 또는 臨時檢査에 合格하지 못한 船舶에 대하여는 이에 合格될 때까지 그 效力이 정지된다.

第3章 海洋施設로부터의 기름 또는 廢棄物의 排出規制

第15條 [海洋施設로부터의 기름 또는 廢棄物의 排出금지] ①누구든지 海洋施設로부터 기름 또는 廢棄物을 排出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86.12.31>

1. 海洋施設의 安全을 확보하거나 人命을 救助하기 위한 기름 또는 廢棄物의 排出
2. 海洋施設의 損傷 기타 부득이한 原因에 의하여 기름 또는 廢棄物이 排出된 경우에 계속 나오는 것을

防止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措置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기는 기름 또는 廢棄物의 排出

②第1項 本文의 規定은 海洋施設 內에 있는 者의 日常生活에서 생기는 糞尿 등 廢棄物을 保健社會部令으로 정하는 處理方法 및 指定海域에 排出하는 경우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改正 86. 12. 31>

③第1項 本文의 規定은 기름 또는 第10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을 保健社會部令으로 정하는 排出方法에 관한 基準에 따라 排出하는 경우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改正 86. 12. 31>

④第1項 本文의 規定은 海洋施設에서 생긴 鐵滓 등을 保健社會部令으로 정하는 處理方法 및 指定海域에 排出하는 경우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改正 86. 12. 31>

第16條 【海洋施設의 設置登錄】 海洋施設을 設置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建設部長官 또는 海運港灣廳長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登錄事項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第16條의2 【汚染防止管理人】 海洋施設設置者는 海洋施設로부터 기름 및 廢棄物의 排出防止에 관한 業務를 管理하기 위하여 汚染防止管理人을 任命하여야 한다.

②海洋施設設置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汚染防止管理人을 任命한 證憑書類를 海洋施設 內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汚染防止管理人의 資格, 業務內容, 준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共同部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86. 12. 31>

第4章 廢油處理事業 등

第17條 【事業의 許可】 ①廢油處理를 業으로 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海運港灣廳長의 許

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事項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廢油處理業의 施設基準 기타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8條 【許可의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이 法에 의한 廢油處理業의 許可를 받을 수 없다. <改正 86. 12. 31>

1. 禁止産者・限定治産者
2.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이 法에 위반하여 罰金 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4. 第24條의 規定에 의하여 廢油處理業의 許可가 取消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第1號 내지 第4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그 代表者로 되어 있거나 議決權을 행사할 수 있는 法人 또는 團體

第19條 【事業開始의 申告】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者(이하 “廢油處理業者”라 한다)가 事業을 開始한 때에는 遲滯없이 海運港灣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第20條 【廢油의 收去處理 등】 ①船舶 또는 海洋施設로부터 廢油를 收去한 者는 그 廢油를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廢油處理施設이나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自家廢油處理施設 또는 第25條의 2의 規定에 의한 貯藏施設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②廢油處理業者는 정당한 사유없이 廢油의 引受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③廢油處理業者는 廢油處理臺帳을 비치하고 共同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記錄・ 보존하여야 한다.

<全改 86. 12. 31>

第21條 【廢油處理施設의 維持 등】 廢油處理業者가 設置하는 廢油處理施設은

第1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基準 및 廢油處理方法에 적합하도록 維持되어야 한다.

第22條 [廢油處理施設의 操業정지 등]

①海運港灣廳長은 第1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廢油處理施設基準 및 廢油處理方法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期間을 정하여 그 施設의 改善을 命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改善命令을 받은 者가 그 命令을 違反한 때에는 당해 施設의 操業정지를 命할 수 있다.

第23條 [事業의 休業 및 廢業] 廢油處理業者가 그 事業의 全部 또는 一部를 休業하거나 廢業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海運港灣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第24條 [事業許可의 取消] ①海運港灣廳長은 廢油處理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

1.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違反한 때
2. 正當한 事由없이 許可받은 事項을 履行하지 아니한 때
3. 削除<86.12.31>

②海運港灣廳長은 廢油處理業者가 第18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許可를 取消하여야 한다. 다만, 第18條 第5號에 해당하는 경우 그 代表者나 議決權을 행사할 수 있는 者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月 이내에 改任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25條 [自家廢油處理施設] ①自家廢油處理施設을 設置하고자 하는 者는 海運港灣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第17條第2項·第19條·第21條·第22條 및 第23條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第25條의2 [貯藏施設의 設置·운영]

①港灣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管理廳 및 漁港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한 管理廳(이하 “港灣管理廳”이라 한다)은 당

해 港灣을 入·出港하는 船舶으로부터 발생되는 廢油 또는 廢棄物을 貯藏할 수 있는 貯藏施設을 設置·운영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貯藏施設을 設置·운영하는 港灣管理廳은 廢油·廢棄物貯藏臺帳을 비치하고 記錄·보존하여야 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貯藏施設의 設置·운영 및 廢油·廢棄物貯藏臺帳의 記錄·보존 기타 필요한 사항은 共同部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86.12.31>

第5章 海洋汚染防除措置

第26條 [大量의 기름이 排出되는 경우의 申告]

①海洋에 排出된 기름이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基準을 초과한 때(“大量의 기름의 排出”이라 한다. 이하 같다)와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認定할 때에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遲滯없이 內務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1. 排出된 기름이 積載되어 있던 船舶의 船長이나 施設의 管理者
2. 船舶 또는 施設의 從事者가 아닌 者로서 기름의 排出原因이 되는 行爲를 한 者
3. 기름이 海面에 퍼져 있는 것을 발견한 者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하여야 할 事項은 다음 各號와 같다.

1. 기름이 排出된 日時 및 場所
2. 排出된 기름의 量과 擴散되는 狀況
3. 排出된 기름이 積載되어 있던 船舶 및 海洋施設 또는 기타 施設(陸上に 있는 것을 포함한다.)

第27條 [大量의 기름이 排出되는 경우의 防除措置]

①大量의 기름이 排出되는 경우 第26條第1項第1號 및 第2號에 規定된 者는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排出된 기름의 擴散과 除去 및 계속되는 排出의 防止를 위한 應急措置를 하여야 한다.

②大量的 기름이 排出되는 경우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排出되는 기름의 防除措置를 즉시 取하여야 한다.

1. 第26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船舶의 所有者 또는 施設의 設置者(“施設이 賃貸되어 있을 때에는 施設의 賃借人” 이하 같다)

2. 第1號에 해당하는 者 이외의 者로서 당해 業務에 관련하여 기름의 排出原因이 되는 行爲를 한 者의 使用者

③第2項 各號에 해당하는 者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防除措置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內務部長官은 그 者에게 필요한 措置를 하도록 命할 수 있다.

④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기름을 防除하는데 사용하는 資材 및 藥劑는 型式承認·檢定 또는 인정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新設 86.12.31>

第28條 [資材 및 藥劑의 비치] ①港灣管理廳·船舶所有者 또는 海洋施設設置者는 排出되는 기름의 防除를 하기 위하여 당해 船舶·海洋施設 또는 保管施設 내에 型式承認 및 檢定 또는 인정을 받은 資材 및 藥劑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資材 및 藥劑를 비치할 船舶·海洋施設 또는 保管施設의 범위와 비치하여야 할 資材 및 藥劑의 種類·規格 기타 필요한 사항은 共同部令으로 정한다.
<全改 86.12.31>

第29條 [廢棄物 등이 排出된 경우의 防除措置] 內務部長官은 排出된 廢棄物 등(기름을 제외한다)으로 海洋이 汚染되어 海洋環境의 保全에 顯著的한 障害가 있거나 障害를 미칠 우려가 있어 緊急하게 防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行爲를 한 者에 대하여 大統領

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第30條 [費用의 負擔] ①內務部長官은 第27條 및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防除措置를 하여야 할 者가 그 措置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措置만으로 海洋의 汚染을 防止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관계機關의 協助를 얻어 필요한 措置를 取하고 防除措置에 所要된 費用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船舶의 所有者 또는 施設의 設置者에게 負擔시킬 수 있다. 다만, 天災·地變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事由에 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負擔시킨 費用의 徵收에 관하여는 行政代執行法 第5條 및 第6條를 準用한다.

③第1項의 경우에 기름 또는 廢棄物의 排出에 대하여 責任을 질 者가 따로 있는 때에는 船舶의 所有者 또는 施設의 設置者는 그 者에 대하여 負擔한 費用의 求償權을 가진다.

第31條 [財産의 處分] 內務部長官은 沿岸海域에서 排出된 大量的의 기름에 의하여 海域이 顯著하게 汚染되어 당해 汚染으로 海洋環境保全에 상당한 障害를 주거나 사람의 健康을 害하고 財産上에 重大한 損害를 加하거나 또는 事業活動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어 緊急히 이들 障害를 防止하기 위하여 排出되는 기름의 防除措置를 取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防除措置에 필요한 最小限의 범위 안에서 排出된 기름이 積載되어 있는 船舶을 破壞하고 그 排出된 기름을 燒却하는 이외에 排出된 기름이 있는 現場附近의 海域에 있는 財産을 處分할 수 있다.

第6章 紛爭調停 및 被害賠償

第32條 [紛爭의 調停申請] ①海域의 汚染으로 인하여 紛爭이 발생한 때에는 當事者는 內務部長官에게 紛爭의 調停

을 申請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停의 申請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33條 【調停委員會】 ①海域의 染染으로 인한 紛爭을 調停하게 하기 위하여 內務部長官 소속하에 海洋汚染紛爭 調停委員會(이하 “調停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停委員會의 委員은 15人 이상 20人 이내로 하되, 公益을 代表하는 者와 海洋環境·水産業·船舶産業 또는 公衆保健에 관한 學識과 經驗이 豊富한 者 중에서 內務部長官이 任命 또는 委囑한다. <改正 86.12.31>

③調停委員會의 構成·機能·運營 기타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34條 【調査委員의 指名】 內務部長官은 第32條의 規定에 의한 調停申請이 있을 때에는 調停委員 중에서 5人 이내의 調査委員을 指名하여야 한다.

第35條 【事實調査 등】 ①調査委員은 關係當事者間의 紛爭의 解決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當事者 또는 參考人에 대하여 출석하여 陳述할 것을 要求하거나 관계 書類를 閱覽 또는 公務所 기타 公私團體에 照會하거나 關係 事業場에 出入하여 調査할 수 있다.

②調査委員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할 때에는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關係人에게 提示하여야 한다.

第36條 【調停委員의 義務】 調停委員은 紛爭調停 중에 知得한 秘密을 漏泄하여서는 아니된다.

第37條 【調停效力】 ①調停委員會는 紛爭의 調停申請을 받은 날로부터 90日 내에 調停案을 作成하여 當事者에게 提示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停案에 대하여 當事者가 이를 受諾한 때에는 調停委員 全員은 調停調書를 作成하고 當事者와 함께 이에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調停調書는 民事訴訟法 第206條의 規定에 의한 和解調書의 效力과 同一한 效力이 있다.

第37條의2 【被害賠償】 ①船舶 또는 海洋施設로부터 排出된 기름 또는 廢棄物에 의한 海洋의 汚染으로 인하여 他人의 生命·身體 또는 財産에 被害를 준 때에는 그 기름 또는 廢棄物을 排出한 船舶所有者 또는 海洋施設設置者는 그 被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賠償의 基準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法律로 定한다.

<本條新設 86.12.31>

第7章 補 則

第38條 【廢船의 規制】 ①누구든지 船舶을 海域에 버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海域에 共同部令으로 定하는 方法에 의하여 버리는 경우 또는 除去하기 곤란한 遭難船舶을 放置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86.12.31>

②船舶을 解撤하고자 하는 者는 解撤 및 이와 관련된 作業過程에서 기름 또는 廢棄物을 排出하지 아니하도록 內務部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海洋汚染防止를 위한 作業計劃을 樹立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新設 86.12.31>

第39條 【關係機關의 協助】 ①內務部長官은 이 法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關係 行政機關의 長에 대하여 緊急한 海洋汚染防止를 위한 人力 및 裝備의 動員과 海洋環境의 保全에 관한 資料 또는 情報의 제공 기타 필요한 協助를 要請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內務部長官으로부터 協助要請을 받은 行政機關의 長은 特別한 事由가 없는 限 이에 응하여야 한다.

第40條 【出入檢査·報告 등】 ①內務

部長官은 海洋汚染防止 및 海洋環境保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公務員으로 하여금 船舶·海洋施設 또는 그 事務所·廢油處理事業場 등을 出入·檢査하게 할 수 있으며, 당해 事業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出入檢査를 행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携帶하고 이를 關係人에게 提示하여야 한다.

③船舶所有者 또는 海洋施設設置者 등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관계 公務員의 出入檢査·보고指示 등을 正當한 理由없이 拒否하여서는 아니된다.

第41條 【海洋環境監視員】 ①內務部長官은 第4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관계 公務員의 職務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海洋環境監視員을 任命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海洋環境監視員의 任命·資格·職務 기타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42條 【기름記錄簿寫本의 제출】 第4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船舶에 出入한 海洋環境監視員은 船長 또는 船舶所有者에게 기름記錄簿寫本의 제출을 要求할 수 있으며, 그 要求를 받은 船長 또는 船舶所有者는 正當한 理由없이 이를 拒否하여서는 아니된다.

第43條 【停船·檢索·拿捕 등】 船舶이 이 法의 規定을 違反한 嫌疑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當局은 停船·檢索·拿捕 기타 필요한 命令이나 措置를 할 수 있다.

第44條 【海域의 管理】 港灣法에 의한 港灣區域, 公有水面管理法에 의한 公有水面, 漁港法에 의한 漁港區域의 海域에 第27條 및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汚染 이외의 汚染이 있을 때에는 그 海域을 管轄하는 主務官廳의 長이 이를 防除하여야 한다.

第44條의2 【海域別水質基準】 ①環境廳長은 海洋環境의 適正한 保全을 위

하여 海域의 自然地形, 用途 및 陸地로부터의 距離 등에 따라 海域別海水의 水質基準을 設定할 수 있다.

②環境廳長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海域別海水의 水質基準을 設定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海域을 管轄하는 主務官廳의 意見을 들어야 하며, 海域別水質基準을 設定한 때에는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81.12.31>

第44條의3 【沿岸汚染의 방지】 ①環境廳長은 閉鎖性海域 등이 汚染되어 第44條의 2의 規定에 의한 海域別海水의 水質基準의 維持가 곤란하고, 海洋環境의 保全에 현저한 障害가 있거나 障害를 미칠 우려가 있어 汚染防止를 위한 特別對策이 必要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汚染에 影響을 미친다고 判斷되는 陸地에 接續한 一定한 海域을 沿岸汚染特別管理海域으로 指定할 수 있다.

②環境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된 特別管理海域의 汚染防止基準 등을 정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海域의 이용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環境廳長은 沿岸汚染狀況 및 汚染源의 調査 등을 위하여 汚染測定網을 設置하고 이를 定期的으로 管理·運營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81.12.31>

第45條 【國庫補助】 政府는 海洋汚染防止裝置·廢油處理事業 기타 海洋汚染防止에 관한 施設의 裝置나 設置 또는 改善에 필요한 費用의 一部를 國庫에서 補助할 수 있다.<改正 86.12.31>

第46條 【海洋汚染防止審議委員會】

①海洋汚染防止에 관한 重要한 政策의 樹立 및 執行에 관한 事項을 審議하게 하기 위하여 國務總理所屬下에 海洋汚染防止審議委員會를 둔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海洋汚染防止審議委員會의 構成·機能·運營 기타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全改 81.12.31〉

第46條의2 [海洋汚染防止裝置・資材 또는 藥劑의 型式承認 등] ①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海洋汚染防止裝置, 第27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資材 또는 藥劑를 製作・製造하거나 輸入하고자 하는 者는 그 型式에 關하여 海運港灣廳長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型式承認을 얻은 者가 海洋汚染防止裝置・資材 또는 藥劑를 製作・製造하거나 輸入한 때에는 당해 海洋汚染防止裝置・資材 또는 藥劑에 대하여 海運港灣廳長의 檢定을 받아야 한다.

③協約當事國에서 船舶에 海洋汚染防止裝置를 設置하거나 資材 또는 藥劑를 비치한 者가 海運港灣廳長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型式承認 및 檢定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海運港灣廳長은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海洋汚染防止裝置・資材 또는 藥劑에 대한 檢定 및 인정을 그 能力이 있는 者를 지정하여 代行하게 할 수 있다.

⑤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型式承認・檢定 및 인정과 檢定 및 인정 代行者의 지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共同部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86.12.31〉

第46條의3 [聽聞] 水産廳長・環境廳長 또는 海運港灣廳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處分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共同部令 또는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外에 依하여 미리 當事者 또는 그 代理人에게 의견을 陳述할 機會를 주어 야 한다. 다만, 當事者 또는 그 代理人이 相當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住所不明 등으로 意見陳述의 機會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運搬 船登錄의 取消

2. 第14條의7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船舶의 航行停止 處分
3. 第2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廢物處理施設의 操業停止命令
4.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廢物處理業 許可의 取消

〈本條新設 86.12.31〉

第46條의4 [關係要員에 대한 教育・訓練] 第7條 및 第6條의 2의 規定에 의한 汚染防止管理人,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廢物處理業에 종사하는 技術要員 및 船舶安全法 第16條의 3의 規定에 의한 船舶解撤業에 종사하는 技術要員을 雇傭한 者는 그 소속 關係要員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外에 依하여 5年 마다 1回 이상 海洋汚染防止에 關한 教育・訓練을 받게 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86.12.31〉

第46條의5 [手數料] ①이 法에 의 한 檢査・型式承認・檢定 또는 인정을 받고자 하는 者는 共同部令이 정하는 外에 依하여 手數料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第14條의6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지정된 檢査代行者와 第46條의2 第4項 的 規定에 依하여 지정된 檢定 및 인정 代行者가 檢査・檢定 및 人정을 행하는 경우에는 水産廳長 또는 海運港灣廳長 의 승인을 얻은 手數料을 그 代行者가 徵收할 수 있다.

〈本條新設 86.12.31〉

第47條 [權限의 委任] 이 法에 의 한 內務部長官・水産廳長・環境廳長 또는 海運港灣廳長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外에 依하여 海洋警察隊長 및 海面에서 가장 가까운 警察機關의 長・環境支廳長 또는 地方海運港灣廳長에게 각각 委任할 수 있다.

〈全改 86.12.31〉

第48條 [部令의 制定・改正에 關한 協議] 主務部長官은 內務部令, 共同部令 또는 保健社會部令을 制定하거나 改正 하고자 할 때에는 內務部長官・農水産部長官・保健社會部長官 또는 交通部長

官과 미리 協議하여야 한다.
(金改 86.12.31)

第8章 罰則

第49條 [罰則]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2,0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86.12.31>

1. 第5條第1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기름을 排出한 者
 2.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廢棄物을 排出한 者
 3. 第14條의5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船舶을 航行에 사용한 者<新設 86.12.31>
 4.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기름 또는 廢棄物을 排出한 者
 5.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廢油處理業을 한 者
 6. 第2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違反한 者
 7. 第27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
 8. 第27條第3項 및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違反한 者
 9. 第38條第1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
- ②過失로 인하여 第1項第1號·第2號 또는 第4號의 罪를 범한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1,0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新設 86.12.31>

第50條 [同前] 第43條의 規定에 의한 命令이나 措置를 拒否· 방해 또는 忌避한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1,0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51條 [同前]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86.12.31>

1.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新設 86.12.31>
2.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
3. 第14條의 7의 規定에 위반한 者

<新設 86.12.31>

4. 第16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
5. 第25條第1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
6. 第36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
7. 第46條의2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新設 86.12.31>

第52條 [同前]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86.12.31>

1. 第6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2. 第6條의 2의 規定에 위반한 者
3. 第6條의 3의 規定에 위반한 者
4. 第14條의 2의 規定에 위반한 者
5. 第20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6.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者
7. 第26條第1項第1號 및 第2號에 해당하는 者로서 申告를 하지 아니 하거나 虛偽申告를 한 者
8. 第27條第4項 및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第53條 [同前]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86.12.31>

1. 第26條第1項第3號에 規定하는 事項을 虛偽로 申告한 者
2. 第38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新設 86.12.31>
3. 第40條第3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
4. 第42條의 規定에 의한 제출을 拒否 또는 忌避한 者

第53條의2 [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8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2. 第14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7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2.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虛偽申告를 한 者

- 3. 第14條의5 第5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 4. 第16條의2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 5. 第19條 또는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虛僞申告를 한 者
- 6. 第20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 7. 第46條의 4의 規定에 위반한 者

<本條新設 86.12.31>

第53條의3 [過怠料의 賦課·徵收 등]

①第53條의 2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內務部長官, 水産廳長, 環境廳長 또는 海運港灣廳長이 賦課·徵收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內務部長官, 水産廳長, 環境廳長 또는 海運港灣廳長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處分을 받은 者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內務部長官, 水産廳長, 環境廳長 또는 海運港灣廳長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國稅滯納 處分の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本條新設 86.12.31>

第54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個人的 代理人·使用人 기타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的 業務에 관하여 第49條 내지 第53條의 罪를 犯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 대하여도 各本條의 罰金刑에 處한다.

第55條 [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 擬制] 第14條의6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檢査代行者와 第46條의2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檢査 및 인정代行者의 任員 및 職員은 第14條의 2의 規定에 의한 海洋汚染防止裝置의 檢査와 第46條의2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海洋汚染防止裝置, 資材 또는 藥劑의 檢定 및 인정에 관하여는 刑法 第129條 내지 第133條의 規定의 適用에 있어서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本條新設 86.12.31>

附 則

①[施行日] 이 法은 1978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船底廢水排出防止裝置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第9條第1項의 規定이 適用되지 아니하는 船舶은 2年 내에 이 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한 船底廢水排出防止裝置를 하여야 한다.

③[廢棄物運搬船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廢棄物運搬에 사용하고 있는 船舶은 6月 내에 이 法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여야 한다.

④[기름記錄簿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第9條第1項의 規定이 適用되지 아니하는 船舶은 6月 내에 이 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 기름記錄簿를 備置하여야 한다.

⑤[廢棄物記錄簿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廢棄物運搬에 사용하고 있는 船舶은 6月 내에 이 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處理記錄簿를 備置하여야 한다.

⑥[海洋施設設置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海洋施設을 設置한 者는 6月 내에 이 法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여야 한다.

⑦[廢油處理業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廢油處理業을 하고 있는 者는 1年 내에 이 法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아야 한다.

⑧[自家廢油處理施設設置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自家廢油處理施

設을 設置한 者는 6月 內에 이 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여야 한다.

附 則(1981. 12. 31)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1986. 12. 3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7年 7月 1일부터 施行한다.

第2條 【海洋設施의 記錄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第2條第7號의 規定에 의하여 海洋設施이 되는 당해 設施의 設置者는 이 法 施行日로부터 6月 內에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여야 한다.

第3條 【海洋汚染防止裝置의 設置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의 船舶으로서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海洋汚染防止裝置(중건의 船底廢水排出防止裝置를 제외한다)를 設置하여야 할 船舶의 所有者는 이 法 施行日로부터 1年 內에 당해 海洋汚染防止裝置를 設置하여야 한다.

第4條 【廢棄物運搬船의 登錄 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 당시 중건의 規定에 의하여 行한 廢棄物運搬船의 登錄은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環境廳長에게 登錄을 한 것으로 본다.

②이 法 施行 당시 중건의 規定에 의하여 行한 廢棄物運搬船의 變更申告는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環境廳長에게 申告한 것으로 본다.

第5條 【國際기름 汚染防止證書의 效力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國際協約에 따라 교부한 國際기름汚染防止證書는 第14條의4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水産廳長 또는 海運港灣廳長이 교부한 國際海洋汚染防止證書로 본다.

第6條 【被害賠償에 관한 經過措置】 船舶 또는 海洋設施로부터 排出된 기름 또는 廢棄物에 의한 海洋의 汚染으로 인한 被害의 賠償에 관하여는 第37條의 2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法律이 制定·施行될 때까지는 중건의 예에 의한다.

第7條 【海洋汚染防止를 위한 機資材의 型式承認 및 檢定の 效力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중건의 規定에 의하여 行한 海洋汚染防止를 위한 機資材의 型式承認 및 檢定은 第46條의 2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水産廳長 또는 海運港灣廳長이 당해 海洋汚染防止裝置·資材 또는 藥劑에 대하여 行한 型式承認 및 檢定으로 본다.